

## 학교폭력 예방교육

### ☆ 한들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은?

- 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중학교 선정 및 운영
- 담임교사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상담 활동
-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가고 상담하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행사 활동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간 15차시 이상 실시
-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사제동행 어울림 프로그램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 스포츠 토레활동,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활동
- 회복적 생활교육 활동, 혐오 대응 및 인권 존중 신장 활동
- 푸른나무재단 사이버정글 가디언 푸른코끼리와 함께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확산 운동 학교
-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컨설턴트가 인성인권부장

### I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 1. 법령상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타 장난 등)
-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
- 금품갈취 및 강요 (돈 요구, 강제적 심부름, 강요 )
- 따돌림 및 성폭력
- 사이버폭력(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징후

- \*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학교생활을 주기적으로 묻고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
- \* 아래의 모습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담임교사와 상의 부탁드립니다.
- \* 자녀의 명확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인성인권부로 바로 알려주세요.  
( 인성인권부장 직통전화: 070-4733-6444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 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6. 멍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10.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11.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2. 따돌림 당한 친구 사례를 얘기하며, 그런 경우 부모로서의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한다.

## II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가정 내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방안

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얘기한다.
  4.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할 예절 등을 교육한다.
  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
  7.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
  8.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준다.
  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11.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 ※ 학교폭력 신고.상담: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



### III

## 학교폭력,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해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 정지
- 7호. 전학
- 8호. 학급교체
- 9호. 퇴학

- ▣ 제2호~제4호 및 제6호~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
-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시행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 ▣ 여러 개의 조치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보복 폭력 행사,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학교 폭력과는 별도로 해당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 ○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 ○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외 청소, 화장실 청소, 사자성어 쓰기, 반성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 ○ 4호(사회봉사)

: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 출석정지

: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상기 출석정지의 기준은 현재 개정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임

○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전학

: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 퇴학처분

: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 가해 학생 학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1. 학부모님도 학생과 같이 별도의 교육(병과조치)을 받아야 합니다.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피해 학생의 치료비나 손해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민사상 책임)

♥ 학부모님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 IV 학교폭력발생사안 처리절차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b>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b> 에 신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 된 사안을 <b>신고대장</b>에 반드시 기록하고, <b>학교장</b>, <b>담임교사</b>에게 보고한 후 <b>가·피해학생 학부모</b>에게 통지</li> <li>사안이 중대한 경우, <b>학교장</b> 및 <b>자치위원장</b>에게 즉시 보고</li> </ul>	학교폭력 전담기구
즉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b></li> <li>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li> </ul> <p>&lt;&lt;피해학생&gt;&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b>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b>하고,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li> <li>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li> </ul> <p>&lt;&lt;가해학생 &gt;&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b>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가능</b></li> <li>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b>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b>」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li> </ul>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사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li> </ul> </li> <li>관련학생 심층상담</li> <li>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추정</li> <li><b>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b></li> </ul>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가.피해학생 부모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li> </ul>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처리방향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li> </ul>	학교폭력 전담기구
처리방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li> </ul>	학교장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li> <li>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li> </ul>	자치위원회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li> <li>통보 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li> </ul>	학교장
조치 실행 및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li> <li>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li> <li>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li> <li>피.가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을 실시</li> <li>피.가해학생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li> </ul>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 1 아동학대의 개념

가.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만 18세 이상의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적용되고,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에 적용되어 처리

나.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내용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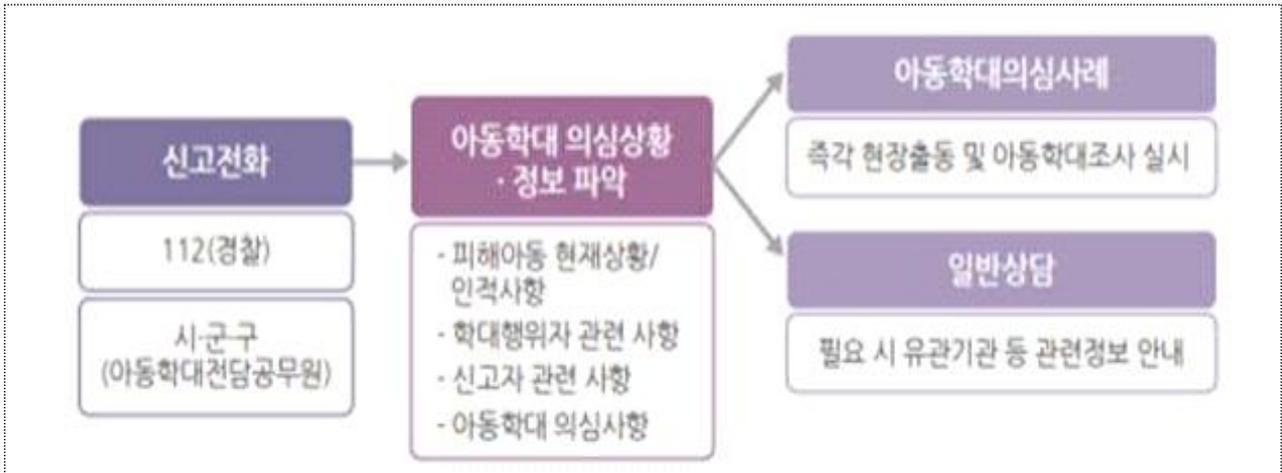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라.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아동학대 신고

####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



#### 나. 아동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 모바일앱(아이지킴콜 앱)
- 보건복지 콜센터 129-6번(아동학대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동부: 042-254-6790, 서부: 042-716-2020)

### 4 징계권 폐지 안내

#### 가.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

#### 나. 징계권 폐지 시기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 자살과 자해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죽고 싶다는 게 진심인 건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살(자해)의 위험에서 내 아이를 지켜낼 부모의 마음 지침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죽고 싶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SOS’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건 아이가 본인의 괴로움을 알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아이에게 도움을 건네야 합니다. 부모가 느끼는 **당혹감을 직접 표현**하거나 **성급히 자녀를 훈계**하려 들지 마십시오.

2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도,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 ◆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증후 ◆

- 1) 식사와 수면습관이 변하고 식사를 잘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4) 일기장이나 SNS에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5)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6)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7)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보입니다.
- 8)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 9)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3

자살과는 또 다른 자해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죽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 자해 행동의 의미 ◆

- 1) 자신의 힘든 처지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의 **신호**
- 2) 자신의 분노나 화를 방출하거나 **표출하는 방법**
- 3) 자신의 우울함이나 불안,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분출구**

#### ◇ 자해 의심 신호 ◇

- 갑자기 생긴 손, 가슴, 허벅지 등의 상처, 잦은 멍과 화상 자국

- 옷이나 이불 등의 핏자국

-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긴 팔, 긴 바지), 손목 밴드나 붕대를 자주 사용

자해 행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뇌에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등의 신경전달물질이 증가해서 진정되는 느낌이 들지만 정작 자기 조절 연습의 기회를 잃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해가 습관적이고 만성적으로 될 위험성이 있지요. 하지만 자해가 위험하다고 해서 아이를 비난하며 책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자해한 이유와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서 판단이나 비난 없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를 행동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 아이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해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 •

1) 반드시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 "너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는데,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 "네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2)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죽겠다'라는 아이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아이에게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도와줄게."

- "네 생각보다 엄마는 너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

5)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해결해 보자."

-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을까?"

6) 분위기 쇄신을 위해 아이의 요구 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외식이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7) 신속히 조치합니다.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하는 것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두고 귀 기울여 주세요.

# 보건 교육



##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이버성폭력 예방**

### 사이버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몸 사진·동영상 등 요구·협박
-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하거나 유포
-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합성·유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사이버성폭력 예방**

### 조심해야 할 것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

### 이렇게 행동해요

- 만남 요구**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 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자신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 성적 문자 영상 전송**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 / 스톱'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

### 도움을 요청해요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경찰 (112·117) / 앱: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도 / 학교전담경찰관
-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상담을 받고 싶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1366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본 저작물은 '2020년' 교육부 사이버 성폭력 예방 포스터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교육

### ○ 양성평등(존중)교육이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남녀 각각의 타고난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 ○ 자녀에게 양성평등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크쇼 '간호사 이야기'  
(학생, 학부모용 동영상)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인]

-동영상 설명-

과거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편견을 깨고 남성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소비자나 의료인 등이 남자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 시각은 여전한데요. 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크쇼 '간호사 이야기'의 홍지수, 김근호 간호사와 함께 간호사로 일하며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pgb\\_O-yiGI](https://www.youtube.com/watch?v=Ypgb_O-yiGI)

▶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genderon.kigepe.or.kr/>

1.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행동을 바로 잡는다.

: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워야 한다

2.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다.

: 아이에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3. 놀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남자는 운동과 칼싸움, 여자는 소꿉놀이와 고무줄 등 성에 따라 놀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난감, 학용품을 사줄 때는 부모의 편견 없이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콘텐츠를 파악한다.

: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TV, 인터넷,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면은 없는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 한다.

5. 집안일은 부모가 모두 참여한다.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가사와 육아 부분이 가장 크다. 아빠는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 양성평등을 위한 카드뉴스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2편]

반면 여자아이의 상상력이거나 나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특히 놀-로더로게구심만 카드뉴스업-리

이미지 출처: 캔터키주립대학 홈페이지

“사회에 만연한 성 고정관념이 아이들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2018)> 중 -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크리스티아 스피어스 브라운

실제로 여아를 키우는 양육자는 '여자 아이들이 수다 떨길 좋아하고 정서적 교류를 더 많이 원한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반면, 남아를 키우는 양육자는 '남자 아이들이 수학에 더 큰 흥미를 가진다'고 여겨 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함께 수를 센다고 하는데요

5  
2 4  
1 3

여자는 문과, 남자는 이과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별 고정관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남자들은 공감능력이 부족해

여자는 과학자 되기 힘들잖아

만약 많은 양육자들이 여아에게 숫자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남아의 정서적 공감에 신경 썼다면, 이런 편견이 생겨났을까요?

아이슬란드의 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여아에게는 신체활동을, 남아에게는 감정교류활동을 강화하는 건데요.

출처: 경향신문(19.10.03)

이 유치원의 여자아이들은 옷이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굵은 날씨에도 야외활동을 즐깁니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친구를 안아주거나 칭찬하고, 음식 만들기 놀이, 그림 그리기를 즐기고요

출처: 경향신문(19.10.03)

기성 장난감 대신 나무블록이나 색깔찰흙 등 젠더 구분 없는 단순한 교구와 인형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출처: 경향신문(19.10.03)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적취향은 다르다”  
“우리 모두는 다르다”



# 흡연 예방 교육

## 1. 흡연 예방 교육의 목적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과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중독 및 청소년 비행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2023학년도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학교 기본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2. 담배 속 유해물질



## 3. 학교 흡연 예방 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b>비전</b>	담배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b>목표</b>	학생 흡연 예방 및 조기 금연을 통한 흡연을 감소에 기여	
<b>추진 과제</b>	<b>흡연예방</b>	<b>금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형(심화형) 학교 운영</li> <li>-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li> <li>- 온라인 및 교과과정 연계 흡연예방교육과정 적용</li> <li>-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SENSE, Jr.END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화형 학교 운영</li> <li>- 금연 지도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운영</li> <li>- 지역금연상담전문가 연계 금연지원</li> <li>- 흡연학생 금연프로그램 운영(CROWN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END 등)</li> </ul>



# 미세먼지 대응 요령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학생생활실천

###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

###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1. 일회용품 줄이고, 미세먼지 줄이고!

1. 집에 들어오면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씻어내기!

1. 마스크 만지기 전 손씻기  
2. 양 손으로 마스크의 날개를 펼치고 날개끝을 오므리기

2.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C) 유지,  
낭비되는 전기에너지 줄이기

2.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호흡곤란시 바로 벗기!

3. 고정심이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잡고 턱부터 시작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다.

3. 가까운 길거나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 물과 과일, 야채 충분히 섭취하기!

4.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하거나 끈을 머리 뒤쪽으로 넘겨 연결고리에 양쪽 끈을 건다.

4. 운전하는 어른께는 정차 중에 시동을 꺼달라고 말씀드려요!

4.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및 외출 피하기!

5. 양 손의 손가락으로 고정 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심을 누른다.

5. 공기정화식물 키우고, 나무도 심고!

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요리할 때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6. 양 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면서 얼굴에 밀착되도록 고정한다.



## 감염병 예방 교육

### ●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이들 질병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선 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만약 자녀가 전염병에 걸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교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심자, 법정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 등교중지 방법

- 1) 전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의사 소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 유의사항

- 의심 학생은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인정으로 처리됨을 안내
-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 시 학생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로 제출
- 소견서 내 치료기간 동안은 학교에 나오면 안 되며, 학원도 가지 않도록 합니다.